

늘 함께하는 풍수해보험



###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

- 대상시설 | 주택(단독, 공동), 온실(비닐하우스), 축사(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)
- 대상지역 | 전국
- 대상재해 | 태풍, 홍수, 호우, 해일, 강풍, 대설
- 납입방법 | 일시납 원칙  
(연간 자기부담보험료 30만원 이상시, 2회납(1회 70%, 2회 30%))
- 판매보험사 | 동부화재, 삼성화재, 현대해상

가입 문의 | 구청(재난관리과) 또는 판매보험사 지점(설계사)

**Tel\_032.560.5082**

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난관리과

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(심곡동 244) Tel.032.560.5082

[www.seo.incheon.kr](http://www.seo.incheon.kr)

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.

봄, 여름, 가을, 겨울

# 풍수해보험



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.

주택

온실

축사



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난관리과

### 풍수해보험이란?

-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태풍, 홍수, 호우, 해일, 강풍, 풍랑 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.

###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가요?

-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: 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(복구비 기준액 대비 30~35%불과)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, 정부는 재정부담 가중
-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·간접적으로 실시: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, 국가가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
-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: “피해발생 → 국가지원”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·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
  - '06년 5월 16일부터 9개 지역을 시작으로 31개 지역에서 풍수해보험을 시범적으로 판매하였고, '08년 4월부터 전국에서 풍수해보험상표주택, 온실, 축사)을 판매하고 있음

###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?

-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~35%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,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%(약 3배정도)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.
  -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61~68%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, 혜택은 최약의 3배 효과 기대
-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.
  - 풍수해보험은 일주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

### 시설별 보상기준

대상 시설물	피해유형	보 상 금 액		
		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50% 보상형	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70% 보상형	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90% 보상형
전파	50㎡ 이하	1,500만원	2,100만원	2,700만원
	50㎡ 초과	주택면적(㎡) × 50% × 60만원	주택면적(㎡) × 70% × 60만원	주택면적(㎡) × 90% × 60만원
	반파	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× 50%		
	소파	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× 25%		
침수	50㎡ 이하	120만원	140만원	160만원
	50㎡ 초과	90만원 + (6천원 × 주택면적(㎡))	80만원 + (1만2천원 × 주택면적(㎡))	70만원 + (1만8천원 × 주택면적(㎡))
주택	동산 (세입자는 단체계약만 가능)	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%에 한해 가입하고 침수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% 지급되던 침수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		
		- 침수 높이 30cm 이하:	침수보험금	
		-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:	반파보험금	
단체계약할인	특정기간(4월, 10월)동안 지자체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 계약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10% 할인			
	단, 단체계약에서 재계약에 한해 연중 가능			
공동주택	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 보상 상품판매 (동산가입 불가, 단지전체 가입 기계 실·관리소 등 부대시설 가입가능)			



- ※ 이 안내장은 풍수해보험의 개요를 소개한 것으로, 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피보험자, 특별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하여 읽어보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풍수해보험

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냅시다!

대상 시설물	피해유형	보 상 금 액		
		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50% 보상형	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70% 보상형	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90% 보상형
온 실	전 파	해 당 없 음	기준단가×70% ×총피해면적	기준단가×90% ×총피해면적
	반 파		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×50%	
	소 파		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×25%	
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	온실의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, 보험가입 금액의 10%를 보상			
하천고수부지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·대설만의 보장특약	하천 고수부지내 온실은 강풍·대설 재해만 보상하고,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			
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	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,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(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) <지급할 보험금의 10%를 한도로 지급>			
축 사	전 파	해 당 없 음	기준단가×70% ×총피해면적	기준단가×90% ×총피해면적
	반 파		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×50%	
	소 파		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×25%	
축산분뇨처리건물 담보특약	축사에 부속되어 있는 분뇨처리건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고,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축사와 동일함			
소파손해 부분장특약	주택, 온실, 축사의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가능			
기 타	보험료분할납 특약	보험기간 1년이고 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만 분납가능 <2회, 12회>		
	손해방지비용 지원	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<20만원을 한도로 지급>		
	계속계약할인	동일한 보험자가 동일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계약 년료율의 5%를 할인하여 적용		
	사고 할인·할증	과거 3년간의 손해 실적에 따라 ±10% 한도 할인 할증		
	장기계약 일사납 할인	2년계약 일사납 : 년료율의 17% 적용(12.5% 할인 효과) 3년계약 일사납 : 년료율의 25% 적용(16.7% 할인 효과)		
	침수보험금 확장특약 (주택)	50㎡ 이하 50㎡ 초과	120만원 90만원+(6천원×주택면적(㎡))	140만원 80만원+(1만2천원×주택면적(㎡))



# 주택

## 가입대상

-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
※제외물건 :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, 부속건물, 빈집

## 상품종류

- 주택Ⅰ : 주택(동산 포함)에 대한 정액보상형 보험상품으로 개별가입과 단체가입이 가능
- 주택Ⅱ : 주택(동산)의 정액보상형 보험 상품에 한해 정해진 기간내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하면 주민부담 보험료의 10%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
- 주택Ⅲ : 주택 중 공동주택(동산제외)에 한해 실손보상형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

## 상품내용

주 계약		보 상 금 액		
피 해 유 형		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50% 보상형	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70% 보상형	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90% 보상형
전 파	50㎡ 이하	1,500만원	2,100만원	2,700만원
	50㎡ 초과	주택면적(㎡)×50% ×60만원	주택면적(㎡)×70% ×60만원	주택면적(㎡)×90% ×60만원
반 파		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×50%		
소 파		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×25%		
침 수	50㎡ 이하	120만원	140만원	160만원
	50㎡ 초과	90만원+(6천원×주택면적(㎡))	80만원+(1만2천원×주택면적(㎡))	70만원+(1만8천원×주택면적(㎡))

선택계약		보 상 금 액		
구 분	보 상 금 액			
등산담보특약	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%에 한해 가입되고, 침수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% 지급하되, 침수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 - 침수 높이 30cm 이하 : 침수 보험금 -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: 반파 보험금 - 침수 높이 100cm 초과 : 전파 보험금			
소파부담보특약	기본 담보의 소파손해를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입보험료의 11.24% 할인 받을 수 있음			

※ 주택 침수 확장특약 선택가입시, 주계약 침수보험금의 2배 지급



# 온실

## 가입대상

-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·임업용 목적의 온실
- ※제외물건
  - 100㎡미만의 온실
  -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것
  -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
  - 농·임업용 목적이 아닌 온실

## 상품내용

### 주계약

피해 유형	보상금액	
	시설을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% 보상형	시설을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% 보상형
전파	기준단가×70%×총피해면적	기준단가×90%×총피해면적
반파	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×50%	
소파	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×25%	
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	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,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(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) ※지급할 보험금의 10%를 한도로 지급	

### 선택계약

구분	보상금액
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	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통풍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, 보험가입금액의 10%를 보상
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 대설면의 담보특약	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·대설 재해만 보상하고,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. 보험기간은 1년 또는 통설기(11월~3월) 중 선택할 수 있음

## 풍수해보험 반드시알아두실 사항

- **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  
보험계약 청약서에는 보험종류, 보험기간, 보험료, 납입기간, 피보험자등을 확인하시고,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·살펴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**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**  
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인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청약서상에 지필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**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**  
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시고 서명경에도 보험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지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. 지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**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**  
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 청약사실문서를 포함합니다. 제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은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**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**  
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중가된 사실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**보험품질보증제도**  
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지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서는 청약완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

# 축사

## 가입대상

- 영농 목적의 축사(한우우사, 유우사 번식돈사, 비육돈사, 산란계사, 육계사, 간이축사) 및 축산분뇨처리 건물
- ※제외물건
  - 간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축사
  - 영농목적이 아닌 축사

## 상품내용

### 주계약

피해 유형	보상금액	
	시설을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% 보상형	시설을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% 보상형
전파	기준단가×70%×총피해면적	기준단가×90%×총피해면적
반파	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×50%	
소파	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×25%	

### 선택계약

구분	보상금액
축산분뇨처리건물	축사에 부속되어 있는 분뇨처리건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고,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축사와 동일함
소파담보특약	기분담보의 소파손해를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4.76%를 할인 받을 수 있음

- **예금자보호 안내**  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.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**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**  
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 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 
금융감독원 보험모집사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. 02-3786-7536, Fax 02-3786-7547, 인터넷 http://www.fss.or.kr
- **보험상당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**  
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입하신 보험회사 대표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. 또한 보험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(국번없이 1332, 02877-5114, www.fss.or.kr)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**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**  
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(사기)에 의거,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보험범죄를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 
Tel : 1588-3311, 홈페이지 : 금융감독원홈페이지(www.fss.or.kr) [인터넷 보험범죄 신고]
- **해약환급금**  
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,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단가율,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 (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충당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)